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

◇ 제 · 개정 이유

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(예규)으로 제정하여 인사고충 해소, 시·도와의 인사교류(일반, 계획) 활성화, 권역별 인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및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제1장 총칙(제1조~제6조)

- 규정 목적, 정의,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, 인사 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, 인사권자 등의 책무, 인사기준의 공개에 관한 사항

나. 제2장 인사위원회(제7조~제9조)

- 인사위원회 설치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

다. 제3장 보직(제10조~제18조)

- 보직인사의 원칙, 부서장의 인사제청 및 희망보직제, 원권역 지정, 원권역 변경, 원권역 복귀순위, 전보인사의 시기 및 기준,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,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

라. 제4장 필수현장보직 관리(제19조~제20조)

- 적용대상 및 기본방침, 필수현장보직 기간에 관한 사항

마. 제5장 인사교류(제21조~제23조)

- 인사교류의 원칙, 일반인사교류 및 계획인사교류의 실시에 관한 사항

바. 제6장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(제24조~제25조)

- 고충상담,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

사. 제7장 보칙(제26조~제30조)

- 격무·기피부서 부서 근무가점, 징계자에 대한 승진심사 평가기준, 인사통계 활용, 해석 및 적용,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